

# 『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건의문』

지난 해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”을 제정·공포하였다.

하지만 이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 및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고, 지방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,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과 지방정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.

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,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,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8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.

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퇴보시키고 법체계를 무시한 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.

2011년 1월 26일

안산시의회 의원 일동